

제 242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9.9.17.)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총무위원회**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 9. 16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9. 3.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9. 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9. 16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미래전략과장 김성운]

### 가. 제안이유

- 2010년 성산마을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유치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은 2014년 구치소 외곽이전 민원이 발생한 이후 6년여 동안 지속된 갈등으로 군정발전을 저해하고,
- 갈등해결을 위해 2018년 11월 5자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5월16일 5자가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고, 7월9일 찬성 · 반대측의 투표 실시구역과 투표문안 등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 거창구치소 추진여부에 대해 군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투표개요

- 투표 대상 :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
- 투표 형식 : 현재 장소 추진 찬성 또는 거창 내 이전 찬성  
중 택일  
<투표문안>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	
현재 장소 추진 찬성	거창 내 이전 찬성

※ 원안·이전 순서는 주민투표 관리규칙 제8조의 규정(투표용지 추첨)에 따름

- 투표 실시구역 : 거창군 전체

2) 투표권자 : 주민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거창군 주민등록자

3) 주민투표 사무관리 :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4) 추진일정(안)

- ‘19. 9. 17. : 군의회 주민투표 동의 및 청구요지 공표
- ‘19. 9. 23. : 주민투표 발의 \* 투표운동 : 발의일부터 투표일전일까지
- ‘19. 9. 24. : 주민투표 원안·이전 운동 대표단체 지정 등
- ‘19. 9. 24. ~ 9. 28. : 투표인명부 작성 (투표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 ‘19. 10. 4. : 주민투표인 명부 확정 (투표일전 12일)
- ‘19. 10. 11.~10. 12. : 사전투표 (투표일전 5일부터 2일간)
- ‘19. 10. 16. : 본 투표(D-day) \*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23일

※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미개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주현]

본 동의안은 2010년 성산마을 약취민원 해결을 위해 유치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이 2014년 구치소 외곽이전 민원이 발생한 이후 6년여 동안 주민들의 지속적인 갈등과 첨예한 찬·반 의견 대립으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갈등해결을 위해 2018년 11월 5자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5월 16일 5자가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고, 7월 9일 찬성·반대측의 투표 실시구역과 투표문안 등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동의를 얻는 것으로써

#### ○ 검토의견으로는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위임하였고,

거창군 주민투표 조례 제4조 제6호에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자치권 보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지역의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해묵은 갈등을 청산하기 위하여 군민의견수렴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